

#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

의안  
번호

8-254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사유

-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이후 25년 이상된 노후·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, 202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산시 고시 제2013-42호)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정밀안전진단(2017.8.) 결과 “조건부 재건축 판정(D급)”으로,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- 동 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에 따라,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주요내용

### 가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	사업의 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주택재건축 정비사업	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단원구 고잔동 665-1번지 일원	-	증)47,417.7	47,417.7	-

## 나. 정비계획 결정조서

### 1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分		면 적 (m <sup>2</sup> )	구 성 비 (%)	비 고
합 계		47,417.7	100.0	
주 택 용 지		39,456.3	83.2	
정비기반 시설용지		소 계	7,961.4	16.8
		도로	2,309.4	4.9
		문화공원	1,748.0	3.7
		소공원	3,934.0	8.3

### 2)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총괄

구 분	위 치		면적(m <sup>2</sup> )	내 용
도로	고잔동 667-1번지	대로 3-1	148.7	•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노선 폭원 확장
	고잔동 667번지 일원	중로 1-25	1,759.5	•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노선 폭원 확장
	고잔동 667-1번지	소로 1-91-1	371.2	•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노선 폭원 확장
공원	고잔동 667번지일원		1,451.2	• 소공원 신설
	고잔동 664번지일원		892.2	• 소공원 신설
	고잔동 667번지일원		1,590.6	• 소공원 신설
	고잔동 664번지		1,748.0	• 문화공원 신설
	합 계		7,961.4	• 구역면적의 16.8%

### 3)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

가구 번호	위 치	구 分		계 획 내 용
1	① (공동주택)	용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 중 아파트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)</li> <li>• 부대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3호)</li> <li>• 복리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4호)</li> </ul>
			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폐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0% 이하</li> </ul>
		상한용적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40% 이하</li> </ul>
		높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5층 이하 (103m 이하)</li> </ul>
		건축한계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로변으로부터 6m</li> </ul>

주1) 추가용적률은 20%P까지 부여가능하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제한으로 250%이하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용적율은 10%P부여하여 250%로 적용용적률을 산정

주2) 추가용적률은 안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시 조건부로 명기하여 통보하고, 사업승인 시 사업승인권자가 조건내용 반영여부를 확인 후 승인

#### 4)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

구 분	기준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	
	의무대상	소요면적산정방법
주민공동시설	관리사무소	50세대 이상 • $10m^2 + (\text{세대수} - 50) \times 0.05m^2$ • 100m <sup>2</sup> 초과시 100m <sup>2</sup> 로 설치가능
	어린이 놀이터	150세대 이상
	부대시설	-
	경로당	150세대 이상
	어린이집	300세대 이상 • 300~600세대 미만 : (0.1 x 세대수)명 이상 • 영유아 1명당 4.29m <sup>2</sup> (영유아보육법)
	주민 운동시설	500세대 이상 •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.
	작은 도서관	500세대 이상 • 33m <sup>2</sup> 이상, 열람석 6석 이상
근린생활시설	합계	1,000 세대 이상 • $500m^2 + (\text{세대수} \times 2m^2)$
	-	• 전용면적 1,000m <sup>2</sup> 이상인경우 하역장 설치
경비실	별도의 설치규정 없음	

#### □ 검토의견

-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「202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범위 내인 용적률 250%이하[상한용적률 240%+추가 용적률 10%], 건폐율 60%이하로서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며,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